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42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박 정·김정호·어기구

송옥주 · 김동아 · 김주영

박홍배 · 김병기 · 안호영

황정아 • 박용갑 • 최기상

이학영 · 이연희 · 염태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40년이 되면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한편 현장에서는 업무경력이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

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9조의2제1항·제3항, 제2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세 미만"을 "65세 미만"으로, "60세"를 "65세"로 한다.

제19조의2 제목 중 "임금체계 개편"을 "필요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0세 이상"을 "65세이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을 "자문"으로 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한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65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
 -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
 -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	제19조(정년) ①
의 정년을 <u>60세 이상</u> 으로 정하	65세 이상
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	②
고 근로자의 정년을 <u>60세 미만</u>	65세 미만
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u>60</u>	<u>65</u>
<u>세</u> 로 정한 것으로 본다.	<u>세</u>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u>임금</u>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u>필요</u>
<u>체계 개편</u> 등) ① 제19조제1항	한 조치 등) ①
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	
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여건에 따라 <u>임금체계</u>	필요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u>다만, 60세 이상</u>
한다. <단서 신설>	인 근로자에 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underline{6}$	③ <u>6</u>
<u>0세 이상</u> 으로 연장하는 사업	5세 이상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	

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생 략)

<신 설>

자문	
<u>.</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 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